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양수인의 중전 행정제재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74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양수인의 종전 행정제재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612호 주요 내용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
(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양수인의 종전 행정제재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

개정안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는 양수인이 종전의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생 략) <u><신 설></u>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28조의2는 본문에서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받은 때에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이는 그 지위를 승계받는 시점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존재 또는 그 사유가 되는 위반사실이 존재함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양수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제재처분을 갑작스럽게 받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그런데, 어떠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이 선의의 양수인임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현행법상의 보호 규정은 실제 그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사후적인 선의의 양수인 보호 외에, 추가적으로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의 이력 또는 절차 진행 여부를 양도인의 동의 하에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수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유사 입법례에서는 개정안과 달리 ① 양수인 등에게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② 양수인 등이 이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양도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장관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유사 입법례에 맞추어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양수인 등의 확인의무를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2026. 3. 17. 확인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안병길 의원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071호)”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2023년 11월 23일 상정된 이후 임기만료에 따라 2024년 5월 29일 폐기되었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7월에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의 개정 대상에 해당하는 현행법 제28조의2를 포함한 43개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행정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하거나, 「행정기본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음.

당시 법제처는 이와 관련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²⁾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2) 의안번호 제220300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3-612호 주요 내용

□ 의결 개요

구분	내용
의안번호	- 제2023-612호
의안명	-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의결일	- 2023. 7. 10.

□ 개선방안

연번	개선방안	
	내용	대상
1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 마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2	-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 마련으로 불확정성 해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등 9개 규정
3	- 제도취지에 어긋난 승계기간 취지에 맞게 개선	-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등 4개 규정
4	- 선의의 양수인 보호규정 보완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등 4개 규정
5	- 선의 보호 및 용이한 입증을 위한 규정 도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43개 규정

□ 조치사항

연번	조치사항
1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이 없는 법률에 승계 규정 마련
2	- 영업 취소 후 영업제한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
3	- 행정처분 효과 승계 취지에 맞게 승계 기간 설정
4	-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행정제재 방지
5	-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

□ 조치사항 5 관련 대상 법령 및 피권고 기관 목록

연번	피권고 기관	대상 법령 조문
1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2	국토교통부	- 골재채취법 제45조
3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비료관리법 제21조의2 - 양곡관리법 제21조의2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농약관리법 제5조의2
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의2 - 농어촌정비법 제90조
6	문화재청 (現 국가유산청)	-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2
7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8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9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제89조의2
10	산업통상자원부 (現 산업통상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의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5조 - 전기사업법 제11조의2 (現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4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식품위생법 제78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0조 - 화장품법 제26조의2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 의료기기법 제48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12	여성가족부 (現 성평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3	해양수산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연번	피권고 기관	대상 법령 조문
14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의2
15	환경부 (現기후에너지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제49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50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3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의2